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답변
1	투자대상사업참여자격	2020년 3월 31일 개발허가 받은 사업 접수 가능여부	불가능합니다. 2020년 2월말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에 한하여 투자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참여자격 여부	기 운영중인 사업의 경우도 투자대상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기 운영중인 사업 중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1	투자대상사업참여자격	제주 특성상 발전사업허가를 개발허가 득하고 신청하게 되어있어서 발전사업허가는 5월 1일~ 5월 11일 사이 받을 예정이며, 발전허가 받는 즉시 한국전력공사에 배전선로이용계약 신청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DL 10MW 여유) 위와 같은 인허가 상황도 접수가 가능한지요.	2020년 2월말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에 한하여 투자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투자대상사업참여자격 (발전사업규모)	예를 들어 100m 이내 연접하여 A: 994.5kw, B: 994.5kw, C: 897.25kw 세개 발전소가 그룹화되어 있는 경우 C발전소가 900KW 이하여도 A,B,C 함께 참여하는 경우 C발전소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2	투자대상사업참여자격 (발전사업규모)	Case1) 법인 6개, 각 500kW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그룹화 할 경우 3,000kW이므로 참여 가능 Case2) 법인 4개, 각 500kW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Case1) 맞습니다 Case2) 맞습니다 Case2-1) 1개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불임1)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답변
		그룹화 할 경우 2,000kW이므로 대상 아님. Case2-1) 법인 4개, 각 500kW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법인 1개에 나머지 3개 법인 전기사업양수도 후, 1개 법인 2,000kW로 신청. 단, 본 프로그램 접수 시점에 발전사업 명의자 변경 절차 미완료. 이 경우 1개 법인 900kW 이상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 필요	투자대상사업선정 참여 신청서 상 신청인 상호에 REC 계약체결 예정인 법인으로 표시하되 주석으로 사업양수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및 각각의 양도대상 법인 명의 및 발전용량도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의자 변경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세후사업수익률	세후사업수익률 산정시 기준을 질의드립니다 법인세의 경우 재무모델에 반영된 자본구조 하의 법인세를 반영하면 되는지(자기자본비율이 10%라면 90% 대출금의 이자비용 손금 반영효과 반영) 또는 차입금 이자비용의 손금 반영효과를 제외한 법인세를 별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사업자가 제시한 자본구조 하에서 계산되는 법인세를 반영한 세후 사업수익률을 산정하기 바랍니다. 즉, 별도의 자본구조 하에서의 법인세를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세후사업수익률	운영기간의 운영수입 및 운영비 현금흐름은 분기별 재무모델 가정에 따라 분기별로 반영하되, 건설기간의 현금흐름은 실제 발생월에 현금유출을 반영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ex. 건설기간에 5월 및 8월에 인출이 발생한다면 5월 및 8월에 현금유출반영하고,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은 분기별로 현금흐름 반영)	공고문 별첨 4 “재무모델 작성시 주요 가정사항”에 따라 이자비용 및 각종 운영비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해당시점의 분기에 반영하면 되고, 운영수익은 분기별로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건설기간에도 분기별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수익률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답변
5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구체적으로 무슨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공고문 별첨 3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 상의 주주협약, 대출약정,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계약 주요내용을 의미합니다.
5	각종 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수정의견은 평가위원이 제시해주는 것인가요? 작성자가 제시하는 것인가요?	작성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5	EPC 시공실적	시공실적은 PV만인가? ESS도 포함되는가?	시공실적은 PV만을 포함하며 ESS는 제외됩니다.
5	EPC 시공실적	실적의 기간은 없는건인가? (예 최근 3년 등)	평가에서 실적의 기간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대상사업은 공고문 상 별첨2 투자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투자가이드라인상 “최근 3년” 실적 조건은 2017년~2019년 3개년간의 실적을 의미합니다.
5	EPC/O&M 시공실적 산출식	(실적(MW)-10MW)/10 제시된 산출식대로라면, 10MW 이하 실적은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다. 감점도 있는건가요?	계산결과 음수가 산출되는 경우 이를 0으로 간주합니다.
5	참여사 평가	선정된 사업의 EPC 및 O&M사가 대출약정 이전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변경 후의 EPC 및 O&M사가 변경전 EPC 및 O&M사 평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합니다.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답변
		이때 기 제출된 참여사의 평가점수 및 조건충족에 변경 참여사가 해당된다면 가능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7	사업의 양도 양수	입찰에 참여할 법인이 사업을 양도양수를 하였고, 현재 발전사업허가증 변경 중이라면 SPC는 참여하는 법인으로 발전사업허가증은 기존 양도한 법인명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이후 참여법인은 발전사업허가증 변경완료 후 매매계약 및 대출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REC매매계약을 체결할 법인 명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즉 붙임1) 투자대상사업선정 참여 신청서 상 신청인 상호에 REC 계약체결 예정인 법인으로 표시되 주석으로 사업양수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및 양도대상 법인 명의 및 발전용량도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의자 변경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매매계약 체결 예시	- SMP는 89,980원으로 고정하여 계약되나요? - 위와 같은 계약방식인 경우, ESS설치후, 신재생설비 REC 보전 공급량에는 가중치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루프탑인경우) 같은 1.5인가요?	-89,980원은 예시로 제시한 금액이며, 실제 SMP + REC 가격은 사업자 낙찰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ESS설치후 ESS기여분의 REC산정은 기존 계약된 신재생설비의 REC가중치를 적용합니다.
7	매매계약 체결 예시	ESS 추가분에 대한 계약 단가에 대한 기준이 현재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7-8	8-4)설치용량의 준수 8-7-3)투자대상 사업	발전사업허가 3건: 967kw*3건=2,901kw로 허가됨(발전소 사이 최소이격거리가 100m이내임) 한전의 계통연계가능 용량은 2,550~2,700KW임	“신한BNPP동서햇빛드림펀드 투자대상사업 참여 신청서”상 제출한 발전사업허가용량을 추후 계통연계용량에 따라 변경하여 REC매매계약 및 대출약정서를 포함한 각종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합니다. 다만, 본 펀드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답변
	선정 무효화 사항 (사용전검사 설비용량이발전사업 허가용량의 +-10%범위를 초과한 경우)	(최종 설계를 해야 정확한 용량을 줄 수 있다고함) 입찰은 발전사업허가기준인 967kw*3건으로 입찰후 향후 한전의 계통연계용량에 따라 한전의 계통연계가 상기 2,901kw의 -10%범위인 2,611kw가 확보된다면, 870.3kw/870.3kw/870.3kw로 사용전검사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한전계통연계가능 용량이 2,550kw용량이라면, 967kw*3건=2,901kw의 -10%용량인 2,611kw가 충족이 안됨(61kw미달). 이때, 967kw의 향후 발전사업허가를 입찰후 900kw로 변경하고-10%인 810kw로 진행한다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즉, 입찰시 발전사업허가 변경을 해야하나, 한전에서 정확한 용량의 산출이 불가함으로 입찰시 967kw로 입찰을 하고 향후 발전사업허가를 900kw으로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투자가이드라인인 “설치기준 900kW 이상 혹은 SPC별 발전사업들을 그룹화한 사업의 설치규모가 2,700kW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즉 참여신청서에 967kw*3건=2,901kw이렇게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계통용량이 870.3kw/870.3kw/870.3kw 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900kw이하가 되고 그룹화한 사업 설치규모 또한 2,700kw미만이므로 REC계약 및 각종 투자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답변
11	부지 선순위근저당권 혹은 지상권 혹은 임차권 등 토지사용권리 확보	Case1) 종중임대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Case2) 종중임대와 유사한 임대부지(집단소유 부지)보유한 토지 임대 가능 한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 가능합니다. 1) 적법한 토지사용권리가 확보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실사 선행 2)회사채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가 임대차계약 이행을 보증한 경우. 즉,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대출원리금 채무인수하고 F지분 액면가 인수
12	투자가이드라인 "ROOFTOP 태양광 운영사"	- 제시된 대로 신용등급 A 회사 이외의 등록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로부터 관련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는 회사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1)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대출원리금 채무인수하고 F지분 액면가 인수 2)태양광 시설 혹은 임대목적물이 속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관리운영사가 부담 루프탑 태양광 사업의 경우 임대인 리스크, 화재 리스크 등 일반 태양광보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다소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고문 페이지	관련내용	질의사항	답변
21	재무모델상 원리금 지급 분기	원리금 지급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시점은 2020년 5월말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11월 및 5월이 원리금 상환기일로 반영됩니다. 재무모델은 분기별로 작성되므로 매년 2분기 및 4분기에 원리금 지급을 반영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착공시점을 2020년 5월말로 가정하여 매년 11월/ 5월에 원리금 및 각종 비용 지급으로 하되 해당시점의 분기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재무모델 작성의 편의를 위해 재무모델 작성시에는 착공시점을 2020년 6월로 가정하여 12월/6월에 원리금 및 각종 비용지급을 해당시점의 분기에 반영해도 됩니다. 즉 재무모델상으로는 5월/11월로 또는 6월/12월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델상 반영시점과는 별개로 “사업진척도 평가”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업운전개시일은 2020년 5월말에 착공하는 것을 가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간이 재무모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진척도 평가에서 2020년 5월말 착공, 상업운전개시일을 2020년 8월로 제시하여 건설기간을 3개월로 가정하였으나, 재무모델상에는 착공시점을 2020년 6월말 착공, 상업운전개시일을 2020년 12월말로 작성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